

정부계약제도의 운용방향

한정길 / 재무부 국고국장

I. 머리말

US 정부조달시장등 국내건설시장의 개방에 대비하기 위하여는 건설업체의 기술개발을 통한 경쟁력제고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를 위하여는 입찰·계약등 관련제도를 국제관행에 맞춰 공정경쟁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93년초에 공사의 낙찰자 결정방법을 저가심의제에서 최저가낙찰제로 바꾸는 등 대폭적인 제도개선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최저가낙찰제가 시행된 이후 정부가 발주한 대부분의 공사가 예정 가격의 60% 수준에 낙찰·계약됨으로서 부실공사의 우려가 높아지고, 이러한 덩핑입찰은 건설업체의 무모한 수주경쟁이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되는 바, 향후에도 이와 같은 문제점이 개선될 여지가 없다는 판단아래 '93년 5월 총리주재 관계장관 회의에서 '부실공사방지 종합대책'을 마련·시행하게 되었다.

동 대책에는 공사의 시공관리 강화문제, 입찰·계약관련제도 개선, 불법하도급 근절대책 등이 포함되어 있는 바, 이의 일환으로 '93년말 예산회계법을, '93년 9월 예산회계법시행령을 개정, 현재 시행중에 있다.

공사낙찰율 추이 (단위 : %)

| '90 | '91 | '92 | '93.5 |
|-------|-------|-------|-------|
| 91.79 | 89.41 | 86.32 | 61.44 |

자료 : 조달청

'94년중에도 지난해말 개정된 예산회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 '93년중에 새로 도입하여 시행중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PQ), 부대입찰제 등의 집행실태를 면밀히 분석·보완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계속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금년에는 지난해말 US 정부조달협정 타결에 따른 제도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II. '93정부계약제도 개선내용

[1]최저가낙찰제 적용대상 축소조정

종전에는 최저가낙찰제를 예정가격 20억원 이상의 공사(전기·전기통신, 전문공사는 3억원 이상)에 적용하였으나, 이를 100억원이상 공사(전기·전기통신, 전문공사 등은 10억원이상)로 대상을 축소 조정한 것이다.

따라서 100억원미만공사(전기·전기통신, 전문공사등은 10억원미만)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85%이상을 입찰한 자 중 가장 낮은 금액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는 제한적 최저가낙찰제가 적용된다.

이와 같이 최저가낙찰제의 적용대상에서 100억원미만의 공사를 제외한 것은, '92년 11월 건설업편허계의 신규발급으로 건설회사가 종전 918개사에서 1,694개사로 776개사가 늘어났으나, 신규건설회사의 대부분이 중·소건설업체로 100억원미만의 공사를 수주하게 되고 따라서 100억원미만의 공사입찰에 있어 과당경쟁이 특히 심하여 최저가낙찰제를 계속 시행할 경우, 해당공사의 부실화는 물론 중소건설업체의 도산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93년 7월부터 100억원이상의 대형공사중 지하철·댐·교량등과 같이 기술적으로 특수성이 있는 공사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예정자의 자격을 입찰전에 정부가 심사하여 적격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PQ)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최저가낙찰제에 의거 발주된다 할지라도 과당경쟁을 막을 수 있고, 낮은 금액으로 낙찰될 때에도 감독·감리를 철저히 할 경우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였던 것이다.

이에 따라 최저가낙찰제 적용대상을 축소 조정한 '93년 9월이후 공사낙찰율은 아래 표1에서 보는바와 같이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2]차액보증금 현금납부 및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표1> 최저가낙찰제 적용대상 축소조정이후 낙찰율 추이 (단위 : %)

| '92 | '93.5 | '93.8 | '93.9 | '93.10이후 |
|-------|-------|-------|-------|----------|
| 86.32 | 61.44 | 64.70 | 75.60 | 85.0 |

<표2> 정부공사의 낙찰제도 연혁

| 기 간 | 낙찰제도 |
|--------------|---|
| 62년1월-71년12월 | 최저가낙찰제 |
| 72년1월-75년12월 | 부찰제(예정가격 80% 이상 입찰자의 평균치에 가장 가깝게 입찰한 자) |
| 76년1월-81년 2월 | 최저가낙찰제 |
| 81년3월-83년 6월 | 부찰제(예정가격 85% 이상 입찰자의 평균치에 가장 가깝게 입찰한 자) |
| 83년7월-93년 2월 | 저가심의제(직접공사비 미만 입찰인 경우 발주 관서가 적정공사 시공여부를 심의) |
| 93년2월-93년 9월 | 최저가낙찰제(20억이상공사) 제한적최저가낙찰제(20억미만공사) |
| 93년9월23일 이후 | 최저가낙찰제(100억이상공사) 제한적최저가낙찰제(100억미만공사) |

증액 억제

종전에는 예정가격의 85%미만으로 낙찰된 경우에는 예정가격과 낙찰금액과의 차액을 현금 또는 보증서(보증서의 경우는 차액의 2배)중 낙찰자가 선택하여 차액보증금으로 납부할 수 있었으나, 예정가격의 70%미만으로 낙찰된 때에는 차액보증금 중 예정가격의 85% 상당금액과 낙찰금액과의 차액은 반드시 현금으로만 납부하도록 하였다.

이는 덤핑입찰을 방지할 목적으로 도입한 동제도가 보증서로서 납부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덤핑입찰을 방지하는데 크게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판단에 따라 개선한 것이다.

또한 예정가격의 85%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를 설계변경하여 계약금액이 당초보다 10%이상 증액될 때에는 해당 중앙관서의 長의 사전승

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덤핑으로 낙찰되기만 하면 시공중에 설계변경을 통하여 공사금액을 증액시켜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다는 건설업체의 안역한 자세가 불식되도록 개선하였다.

예) 예정가격 : 100억원
낙찰율 : 65%

차액보증금

i) $100-85=15$ 억원 (현금) ————— 선택
($100-85$) $\times 2=30$ 억원 (보증서)

ii) $85-65=20$ 억원 (현금)
따라서 차액보증금은 i) + ii)가 됨

[3] 덤핑입찰로 낙찰된 공사에 대한 연고권 배제

예정가격 100억원이상의 대형공사의 경우 최저가낙찰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과당경쟁에 의한 덤핑입찰의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볼 수 있다.

건설업체가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공사를 수주하려고 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연고권 확보를 들 수 있는데, 연고권이란 당해공사와 연관되어 추후에 발주할 예정인 공사에 대한 기득권(건설업체 상호간에 기득권을 인정하는 관행이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연고권을 인정하지 아니할 경우, 덤핑입찰이 대폭 감소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예정가격의 50% 미만으로 낙찰된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낙찰일로부터 2년동안 당해공사와 시공구간이 중복되거나 접속되는 단지 조성·하천·도로등의 공사입찰에는 참가할 수 없도록 제한하였다.

[4]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PQ) 도입

정부가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에 심사하여 적격자에게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도를 '93. 7. 1부터 도입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우선 심사기준

을 명료하게 객관화 하여야 하고 심사에 필요한 인력 및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에 적용대상을 그동안 덤핑입찰이 주로 발생되었고, 심사기준 마련이 용이한 토목공사위주로 선정, 우선 100억원이상인 댐·지하철·교량·발전소건설공사등 14종의 공사에 적용하기로 하였다.

심사항목으로는 실적(40%), 시공능력(40%), 경영상황(20%) 및 신인도($\pm 10\%$)로 되어 있다.

[5] 부대입찰제 도입으로 하도급자 보호강화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에 있어서는 산출내역서에 시공중 하도급할 부분과 하도급금액 및 하도급예정자를 산출내역서에 기재하여 입찰하여야 하는 부대입찰제를 도입하였다.

이와같이 부대입찰제를 도입·시행함으로써 원수급자가 덤핑입찰후 하도급자에게 저가하도급을 강요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되어 하도급업체가 보호받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이 제도는 처음 도입되는 것으로 업계의 준비가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적용대상을 재무부령인 계약사무처리 규칙에 명시하였다. 우선 100억원이상인 공사중 지하철·댐·교량·공항·고속도로·우탁·준설·항만·터널·발전소·쓰레기소각로·폐수 및 하수종말처리장·철도 등 14종의 특수공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6] 대가지급지정일자 면제제도 폐지

대가지급에 있어 준공금인 경우에는 계약상 대자로부터 대금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기성금인 경우는 14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는 바 동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지급 대가에 대하여 지정기간동안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적용, 지정이자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종전에는 단서를 두어 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기성금·예산배정이 지정되어 대가지급이 지정된 경우 등을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하여 지정이자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이와 같은 지정이자에 대한 면제제도 때문에 정부가 지정이자를 지급한 실례가 거의 없을 정도로 유명무실하게 되어 계약상대방으로부터 불공정 행위하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동제도를 폐지하여 대가지급이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이자를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개선한 것이다.

III. '94정부계약제도 운용방향

[1]부실공사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지속 추진

가)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PQ) 등의 보완

'93년도중에 새로 도입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PQ) 및 부대입찰제의 운용실태를 분석하여 미비점이 발견되면 즉시 보완함으로써 동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PQ제의 적용대상이 현재는 대형토목공사 위주로 되어 있으나,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의 건축공사등에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또한 심사기준에 있어서도 감점제도를 활용, 부실시공을 한 업체는 사실상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나)하자담보책임기간의 연장

'93년말 예산회계법이 개정·시행됨으로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전 최장 5년이내에서 10년이내로 연장된 바 있다.

따라서 공사의 종류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종전보다 평균 2배정도 연장되도록 보완할 예정이며, 특히 5층이상 철근콘크리트구조로 건축된 공동주택의 경우 그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할 계획이다.

다)기술위주 낙찰자 선정

설계·시공일괄입찰에 있어서는 지금까지는 입찰금액을 설계점수로 나누어 그 수치가 가장 적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 결과 설계점수가 극히 낮은자 즉 조잡한 설계를 한 자가 덤핑입찰로 낙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라)노무비기준의 현실화

"94년도중 예정가격 작성시 적용하는 노무비의 단가는 '93년도에 비하여 평균 5%가 인상되도록 결정하였다. 다만, '93년도 이전에 체결되어 '94년중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 적용되는 노무비의 단가는 '93년도 단가에 일률적으로 7.5%를 인상 조정하도록 하였다.

이는 기존 계약체결공사에 대한 부실시공을 방지하자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2]지방중소건설업체의 수주기회 확대

가)지방공동계약제도 도입

지방에서 발주하는 100억원 이상인 대형공사를 공동계약으로 발주할 때에는 그 지역소재 중소건설업체 1인 이상을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업체에 참여시키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지방중소건설업체의 수주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이고, 대형건설업체로부터 기술전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치로서 '93년 12월 행정쇄신위원회의 건의를 수용한 것이다.

다만, '97. 1. 1부터 정부조달시장이 개방되므로 동제도는 '96. 12. 31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용할 예정이다.

나)분할발주금지제도 폐지

동일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시기적으로나 물량기준으로 이를 분할하여 발주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운영한 결과, 대부분의 공사가 대형화되어 지방중소건설업체가 수주하기에는 도급한도액, 면허등의 요건에 미달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제도를 폐지하여 분할발주 여부를 공사의 내용·특정등을 감안 발주관서가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중소건설업체의 수주기회를 확대함과 동시에 건설업체의 전문화가 유도될 수 있도록 하겠다.

[3]US정부조달협정 수결에 따른 정부회계 제도 정비

가)정부조달협정 성립배경과 가입국

①성립배경

정부조달은 비상업적 거래로서, 경제정책의 한 수단으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에 GATT의 내국민대우 원칙의 예외로 인정되었다(GATT 3 조8항)

그러나 1960년대 이후 각국 경제에서 공동부문의 비중이 증대, 정부조달이 세계교역의 큰 부분을 차지(10% 내외)하게 됨에 따라 세계교역의 진정한 자유화를 위해서는 정부조달에 있어서도 비관세 장벽 제거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②협정성립

1979년 동경라운드에서 제정된 9개의 MTN 협정의 하나로 정부조달분야에서의 비관세 장벽제거를 목적으로 정부조달협정이 체결되어 '81. 1. 1부터 발효되었으며, 1988. 2 그내용의 일부가 수정된 바 있다.

③가입국(23개국)

- EC(12개국) : 영국, 프랑스, 독일, 벨기에, 덴마크, 아일랜드, 이태리, 룩셈부르크, 네델란드,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 미국, 일본, 캐나다,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싱가포르, 홍콩, 이스라엘

나)신협정문의 주요내용('93. 12. 15 정부조달협정 확장협상을 타결하여 신협정문을 채택함)

①협정적용 범위

· 적용대상기관 : 기존협정의 중앙정부 및 중앙정부의 실질적 감독하의 기관에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와 정부의 통제 또는 영향력하의 기관으로 확대

· 적용범위 : 기존협정의 물품의 조달계약에서 물품 및 건설, 서비스의 조달계약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전력·운송·상하수도 등 기존 협정적용 범위에서 제외되었던 부분을 협정적용 범위에 포함

②내국민 대우 및 무차별 원칙

각 회원국은 무조건적으로 타회원국 원산의 물품 및 공급자에 대하여 내국산품 및 공급자

에 부여하는 조치보다 불리한 대우를 해서는 안되며(내국민대우), 타회원국의 물품이나 공급자에 부여하는 조치에 불리한 대우를 해서는 안된다.(무차별원칙)

③기술사양

기술사양은 국제무역을 저해하는 장벽이 되어서는 안되며, 조달물품의 설계(Design) 보다 성능(Performance)을 요건으로 해야하며, 이는 국제표준 및 각국의 기술협정이 공인한 국가표준에 기초를 두어야 하고, 특히 특정상표나 특허, 또는 특정디자인이나 형태, 특정원산지나 생산자에 한한다는 요건을 제시해서는 안된다.

④입찰절차

- 입찰가격 : 조달기관은 입찰가격과 관련하여 외국입찰자 상호간 또는 국내외 입찰자에 대한 차별을 하여서는 안된다.
- 자격심사 : 입찰참가조건은 계약이행능력 확인에 필요한 범위로 국한하고 입찰참가자의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의 사업활동을 감안하여 자격심사를 하여야 한다.
- 입찰공고 : 조달기관은 공개입찰 또는 지명입찰시 부속서에 열거된 출판물을 통하여 입찰공고를 하여야 하며, GATT 공동어(영어, 불어, 스페인어)의 하나로 계약의 주대상, 응찰시한, 계약기관서류를 입수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한 요약공고를 하여야 한다.
- 낙찰자 선정 : 최저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자나 또는 입찰공고나 입찰설명서에 명기된 특정 평가기준에 따라 가장 유리한 입찰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정한다.

⑤이의신청절차

- 각 회원국은 특정조달에 이해관계가 있는 공급자들이 조달과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를 다룰 수 있는 공정하고 신속하고 효과적인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 이의신청절차는 법원에 의해 수행되거나 독립적인 기관에 의해 사법절차에 준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 이의신청절차에 규정하여야 할 사항

- ㉠협정의 위반사항을 교정하고 사업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조달절차의 중지를 포함한 신속한 잠정조치
- ㉡이의제기의 정당성에 대한 평가와 그에 대한 판정의 가능성
- ㉢협정의 위반사항 교정 및 손해 또는 피해의 보상. 단, 손해나 피해의 보상은 응찰준비나 이의 제기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에 한정시킬 수 있다.

⑥정보제공

회원국은 정부조달에 관한 법규, 결정, 절차규정을 부속서에 열거된 출판물에 즉시 공포하여 타 회원국 및 공급자가 숙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조달기관은 낙찰후 60일 이내에 낙찰결과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회원국의 요청시 자격심사탈락, 입찰참가거부, 유찰등에 대한 사유등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여야 한다.

⑦예외규정

국가안보, 공공질서, 인간 또는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 지적재산권보호, 장애자, 자선단체, 재소자노동에 의한 생산품의 보호등을 위해서는 협정 적용배제가 가능하다.

⑧협정발효시기

한국, 홍콩을 제외한 여타국가에 대해서는 신협정은 '96. 1. 1부터 발효하고 한국, 홍콩에 대해서는 '97. 1. 1부터 발효기로 한다.

다)정부조달제도 개선

①정부 조달법령체계의 개선

- 현행제도 : 현행 예산회계법은 특별히 내·외국인 차별을 두고 있지는 않다. 다만, 국제입찰의 경우 적용할 별도의 규정으로 외자구매계약규정과 특정물품등의 조달에 관한 예산회계법시행령특례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동 특례규정은 입찰공고기간, 입찰보증금, 입찰서 개찰후의 조건변경, 대가지급, 분쟁처리등에 관하여 예산회계법시행령의 특례를 정하고 있다.
- 개선방향 : 조달제도 전반에 걸쳐 외국인에 대한 특별규정을 폐지하고 조달체계 전반에 국

※우리나라의 최종 양허안

| | 양허기관 | 양허범위 |
|---------|---|---|
| 중앙정부 | · 42개 중앙행정기관 · 안기부 등 4개 안보관련 기관 제외 | · 물 품(13만 SDR) · 서비스(" ") · 건 설(500만 SDR) |
| 지방정부 | · 6개시 및 9개도 | · 물 품(20만 SDR) · 서비스(" ") · 건 설(1,500만 SDR) |
| 기타기관 | · 한전, 한국통신 등 23개 정부투자기관 · 한전 : 중전기품목 일부제외 · 한국통신 : 통신제품 및 일반제품 제외 | · 물 품(45만 SDR) · 건 설(1,500만 SDR) |
| 서비스및 건설 | · 중앙, 지방, 기타기관 · 기타 기관 서비스는 비양허 | · 서비스 : 사업, 통신, 환경, 운송등 49개 업종(금융서비스 제외) · 건설 : 일반 및 전문건설업 7개 업종 |
| 공통예외 | · 재판매 관련 구매 · 중소기업 특별구매 · 농산물 구매 · 인공위성 구매(발효후 5년간) | |

제규범에 적합하도록 개선

②예정가격 작성

- 현행제도 : 조달기관은 각각의 조달에 관하여 예정가격을 작성 사용하고 있으며, 공사계약의 경우 예정가격의 규모에 따라 입찰방법과 낙찰자결정방법을 달리하고 있다. 예정가격작성기준과 예정가격 결정의 기초가 되는 노무비등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를 조사하여 공포하고 있다.
- 개선방향 : 예정가격작성 준칙을 개정하여 조달기관이 물품이나 공사의 성격에 따라 자율적으로 일반관리비비율이나 이윤율등도 정할 수 있게 하며, 예정가격작성의 기초가격인 정부노임단가가 시중노임보다 낮게 고시되는 현제도를 개선
- ③입찰방법
 - 현행제도 : 현행 입찰방법은 일반경쟁입찰

건설정책방향

이 원칙이며, 제한된 조건하에서 지명경쟁 입찰방식과 수의계약방법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 개선방향 : 외국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지명경쟁입찰의 허용범위를 확대하여 조달기관이 발주목적물의 특성에 따라 자격있는 공급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현행 법령상의 수의계약사유를 축소하여 협정문에서 인정되고 있거나, 조문의 수의계약사유를 변경하여 협정문에서 인정되는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개선

④자격심사

· 현행제도 : 예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 지하철·댐공사 등 일부공사에 대하여만 자격심사를 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법령에서 정한 자격만 갖추면 입찰에참가할 수 있다.

· 개선방향 : 신속적인 자격심사규정 마련.
일반적인 사항·절차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각 조달기관별로 기관특성에 맞는 자체적인 세부심사규정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탄력적인 자격심사가 이루어지게 한다.

각 조달기관에 인증공급자 명부 작성을 권장하여 계약사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무자격자의 입찰참여를 제한한다.

⑤입찰공고기간

· 현행제도 : 입찰공고는 입찰일 또는 개찰일 전 10일이내에 하여야 하고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일의 전일로부터 7일이전에 공고하여야 하고, 긴급한 경우, 재공고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일전 또는 개찰일전 5일까지 공고할 수 있다.

· 개선방향 : 협정문에서 정한 입찰공고기간에 적합하도록 입찰공고기간을 조정했다.

⑥입찰공고의 방법 및 내용

· 현행제도

-예정가격이 재무부령이 정하는 일정금액이상인 경우(공사 : 3억원, 제조 : 1억원, 물품의 구매, 기타용역 : 5천만원)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

-입찰공고에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개선방향 : 관보를 부속서 II의 출판물로 사무국에 등록하고 모든 입찰공고를 관보에 공고하도록 하고 양허대상 입찰시에는 입찰공고의 내용에 정부조달협정의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을 명기토록 한다. 요약공고는 영어로써 하며 입찰에 사용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한다.

⑦지명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 지명

· 현행제도 : 지명경쟁입찰에 있어서 지명의 기준은 공사의 경우는 도급한도액, 특수한 기술보유, 제조 기타의 경우는 기술·기계·기구, 생산설비 보유 여부에 따라 지명할 수 있으며, 모든 경우에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이 만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않는 자는 지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개선방향 : 도급한도액 위주의 지명경쟁입찰의 지명기준을 개선하여 업체의 도급한도액, 공사이행실적, 신인도, 재정상태, 기술적 능력보유 등 실제계약 이행능력을 충분히 갖춘 공급업자를 발주관서가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명이 공평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감독할 수 있는 방안 강구

⑧낙찰제도

· 현행제도 : 최저가낙찰제가 원칙이며 일정금액이하의 공사 또는 용역계약은 제한적 최저가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종합낙찰제, 설계시공일괄입찰, 대안입찰등 가격외에 설계능력, 품질 등을 감안하여 낙찰자를 선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제도가 있다.

· 개선방향 : 종합낙찰제, 설계·시공입찰제도, 대안입찰제도등을 활성화하고 가격위주의 낙찰자 선정방식에서 계약이행능력, 품질, 성능등을 감안하여 낙찰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⑨입찰이의신청절차

· 현행제도 : 입찰, 계약과 관련한 분쟁을 처리하는 공식기구는 없으나 재무부의 유권해석과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분쟁을 처리하고, 특례규정에 특정조달에 관련한 분쟁을 처리하는

‘특례조달분쟁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음

· 개선방향 : 협정문 내용을 반영하여 재무부의 분쟁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입찰과 관련한 분쟁을 처리

라)향후 추진계획

①기본방향

· 입찰· 계약관련제도를 국제관행에 적합하도록 개선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업계의 대외경쟁력을 제고시킨다.

· 건설부, 상공부, 조달청등 관계기관과 학계·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국내업계의 충격을 최소화한다.

· 조기('94 말)에 예산회계법령등을 개선하여 국내업체를 대상으로 사전시행하여 미비사항을 보완함과 동시에 업계의 정부조달시장개방에 대한 대응능력을 확보케 한다.

· 관계기관과의 협조로 해외조달시장의 동향과 조달제도에 관한 정보를 신속히 공급하여

업계의 해외시장 진출을 용이케 한다.

②세부 추진계획

㉠법령정비대상

- 예산회계법
- 예산회계법시행령
- 대형공사계약에 관한 예산회계법시행령 특례규정

· 특정물품등의 조달에 관한 예산회계법시행령특례규정 및 규칙

· 외자구매규정

· 회계예규, 회계통칙 등

㉡법령정비추진일정

- '94. 12. 31 예산회계법등 개정완료
- '95. 1. 1~'95. 12. 31 국내업체를 대상으로 사전시행
- '96 시행결과 나타나는 미비점 보완
- '97. 1. 1 정부조달시장 개방

단어가 만들어진 유래

여의도

조선시대엔 여의도를 넓은 벌판이라고 하여 너른벌섬, 너벌섬으로 불리었다.

그것을 한자로 표시하다보니 『너』는 너 여(汝)자로, 『벌』은 옷의 의(依)자로 했었는데 요즘은 『의』를 별 뜻이 없는 어조사 의자로 표시하고 있다.

한편 이 설에 의하면 한강에 떠있는 쓸모없는 벌판이었기 때문에 『너내 가져라』라는 뜻의 여의도라고도 했다고 한다.

그리고 강남 『영동(永東)』은 영등포의 동쪽지역이라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이면수(임연수어)

우리의 식탁에 가끔오르는 고기 이면수는 사실 임연수어(林延壽於)가 올바른 표기이다.

『이면수, 이면수? 』

자세히 읽어보면 사람 이름이란 것을 추측할 수 있는데 사람 이름은 맞되 이면수가 아니라 임연수인 것이다.

함경도 지방에 살았던 임연수란 어부가 그 고기를 잘 잡았다는 데에서 유래한다.

명태(明太)도 이와 비슷한 유래를 가지고 있는데 약 3백여년 전 명천군에 사는 태씨가 잡았다고 해서 관찰사가 붙여준 이름이다.